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공 공연단체와 민간단체가 제작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대표공연을 지역의 공공 공연시설에 유통하여 지역 간 문화 소비 격차 해소와 관객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공공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추가 공모 지원 가능 대상

구분	참여 가능 기준
공연단체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단체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b>10억원이 선정 확정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불가</b> 2)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b>10억원 미만으로 선정 확정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가능</b> - 예)기 공모에서 4억원 선정 확정된 단체는 6억원 추가 신청 가능
공연작품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작품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b>6개 공연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불가</b> 2)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b>6개 미만으로 공연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가능</b> - 예)기 공모에서 3개 공연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3개 시설 추가 유통 가능
공연시설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3개 작품 또는 3억원 <b>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불가</b> 2)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2개 작품 이하 또는 3억원 미만 <b>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가능</b> - 예)기 공모에서 1개 작품으로 0.5억원 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최대 2개 작품으로 추가 2.5억원 신청 가능 3)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참여하지 않은 시설 신청 가능

## □ 공모명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

## □ 사업목적

- 공연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관객 수요가 확인된 공연작품의 지역 유통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기초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제고

## □ 사업 기간

- 2026년 4월 ~ 2027년 4월 (공연기간: ~ 2027년 3월 28일(일) 종료)

## □ 사업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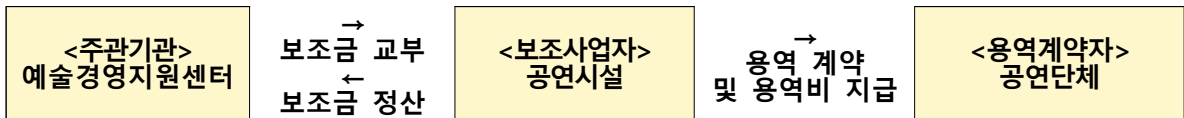
○ 총 61.73억 원 내외 지원

※ 공모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 지원 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공공 공연시설의 사업비(공연 용역비) 일부 지원

○ (지원 절차)



## □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공연예술유통 P:artner (<https://gokams.or.kr/partner>)

「공연예술유통 P:artn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공연유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한 B2B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단체·작품·시설 정보를 표준화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통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공연정보와 유통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절차) 회원가입·정보등록 →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협의 → 공연시설 공모 신청 → 공모 신청 결과 조정 → 공연시설 신청공연 및 지원금 확정



**\* 공연시설 신청 절차**

① [1단계] 공모 확인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 공고 내 대상 공연장 여부 확인

-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3개 작품 또는 3억원 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불가
- \*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공연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불가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800석 이상 공공 실내공연장(등록공연장)
- \* 단, 공연시설 운영 주체당(재단, 지자체, 진흥원 등) 1개 공연장만 지원신청 가능
-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공연시설 [참고 2] 별도 제공

**KOPIS 기준, 광역시도별 800석 이상으로 등록된 실내공연장**

구분	계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800석 이상	61	5	1	2	3	6	2	4	4	3	6	9	7	1	8

② [2단계]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공연유통플랫폼 '공연시설' 회원가입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시설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등록**

- \*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 미제공 시, 지원사업 신청 불가

③ [3단계] 공연검색, 유통협의

지원 신청하는 공연장의 시설조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 '지원대상 공연작품 목록'에서 관심 공연 검색 후, 신청페이지에서 관심 공연의 지원신청정보(과거 실적, 예산, 일정 등) 확인

- \* 기 선정된 공연작품에 대한 지원 현황(일정, 지원금 규모) 등 별도 표기하여 제공 예정

**공연단체와 일정, 무대·기술조건, 예산 등 협의 후, 지원신청 준비**

- \* 공연시설당 서로 다른 장르 최대 3개 공연작품, 3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되므로 공연 일정, 무대 규모, 예산 등을 공연단체와 상호 협의 후 공연시설 지원신청 필요

③ [5단계] 지원신청

공연유통플랫폼 '공연시설' 회원가입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시설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등록**

- \*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 미제공 시, 지원사업 신청 불가

공연유통플랫폼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공연시설)」에서 서로 다른 장르 최대 3개 공연작품, 3억원 이내 선택하여 지원신청

**\* 지원사업 신청시 고려사항**

○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금 3억 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공연작품 장르 구성 신청 예시

가능	1건: 서양음악(클래식)
	2건: 뮤지컬, 연극
	3건: 연극,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불가능	2건: 무용, 무용
	※ 서로 다른 장르 신청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만 신청 가능)
	3건 : 뮤지컬, 뮤지컬, 무용
	※ 서로 다른 장르 신청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만 신청 가능)
	4건: 뮤지컬, 연극, 무용, 한국음악(국악)
	※ 최대 지원 신청 건수 초과(최대 3개 서로 다른 장르 공연 신청 가능)

	○ (재공연 제한) 최근 2년(2024년 1월 ~ 2025년 12월) 내 신청 공연장에서 이미 상연된 공연작품은 신청할 수 없음
④ [6단계] 신청조율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전체 지원신청 현황을 확인한 후 지원 규모 등을 조율
⑤ [7단계] 결과 확정	지원 신청한 결과(공연시설-공연단체-공연작품) 확정 및 플랫폼 공모 결과 공개

## □ 사업 신청대상

### ○ (공연단체)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단체

-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10억원이 선정 확정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불가
  - 2)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단체의 최대 지원 규모인 10억원 미만으로 선정 확정된 단체는 추가 공모 신청 가능
- 기초 공연예술 분야 공공 공연예술단체·기관(광역·기초 지자체가 설립한 단체), 민간 공연예술단체,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면세·과세)
  -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시설과 용역 계약 체결 가능한 단체
  - 지원 대상공연의 주최·주관, 기획·제작사로 KOPIS 등록된 공연단체
- \* 공연을 기획·제작한 단체로부터 지역 순회공연 운영을 위임받은 대행업체는 지원 불가

####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단체)

-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단체
- \* 고유번호증만 보유 시, 참여 불가하며,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필요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 학생 또는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
- KOPIS에 지원 신청한 공연작품의 주관처, 기획·제작사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 ○ (공연작품)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된 공연작품

-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공연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불가
  - 2)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공연 작품의 최대 유통 규모인 6개 미만으로 공연시설 유통이 확정된 작품은 추가 신청 가능
-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KOPIS)에 집계된 유료 공연
  - (장르) KOPIS 기준,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무용(서양/한국), 한국음악(국악) 장르 공연

- (시장성·대중성) ▲KOPIS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 기준,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공연작품, ▲KOPIS 기준, 장르별 회당 티켓판매액 상위 40개 공연작품 중 유통 희망 작품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 공연시설 대상 추가공모」 공연작품 목록[참고 1] 제공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작품)**

- 202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또는 타 기관의 공연예술 유통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된 공연
-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국립기관(공연장)이 공연권을 보유한 공연
- 해외단체의 내한공연
- 장소 특정형(야외, 전용공간 등) 공연
- 전막 외 공연(쇼케이스, 트리아아웃, 뮤지컬 갈라/기념/팬 콘서트 등)
- 학생, 시민 등 아마추어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 축제에서 일회성으로 기획된 공연
- 대회 또는 대회 수상자로 구성된 기획 공연
- 신년·송년·개관 등을 기념하여 일회성으로 기획된 공연
- 종교기관 및 소속 단체 관련 행사성 공연

○ (공연시설) 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②객석 수 800석 이상 등록 실내공연장을 보유한 ③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등)

- 1)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3개 작품 또는 3억원 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불가
- 2)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최대 지원 규모인 2개 작품 이하 또는 3억원 미만 선정 확정된 공연시설은 추가 신청 가능
- 3) 기 추진된('26.2.9~3.30) 공모에서 참여하지 않은 시설 신청 가능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대상 공연장 목록[참고 2] 제공

**KOPIS 기준, 광역시도별 800석 이상으로 등록된 실내공연장**

구분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계
800석 이상	5	1	2	3	6	2	4	4	3	6	9	7	1	8	61

\* 운영 주체당(재단, 지자체, 진흥원 등) 2개 이상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공연장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원 신청 예시**

운영주체 : (재)예경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 : 예경아트센터, 예경시민회관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예경아트센터 (2)예경시민회관 중 1개 공연장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국가계약법에 의거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용역비 집행이 가능한 시설**
- \* 지방계약법 또는 기관의 계약지침에 따라 공연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참여 불가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한 공연시설  
(총사업비 100% = 자기부담금 10% + 지원신청액 90%)
- \* 단, 자부담금은 공연 용역비로만 전액 편성할 수 없으며, 공연 용역비 외 회계수수료, 홍보비 등과 함께 혼합 편성 필요
- 공연예술플랫폼 내 공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를 제공한 시설
- \* 필수 제출 기초 무대기술자료

분류	필수 제출자료
무대	무대장치 목록, 평면도 및 단면도, 배치도
기계	무대기계 장비 목록
조명	조명 장비 목록
음향	음향 장비 목록

- \* 상기 목록 외에 정보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하며, 추후 공연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 제공 필수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시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공연시설(문예회관 등)
- 야외/실외 공연장
- 민간기업/단체/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시설
- 국립시설, 박물관 부속시설

○ **(공통 필수 요건)**

- 공연예술 유통플랫폼(공연예술유통 P:artner) 가입 및 신청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사업 내용(일시, 장소, 예산, 수익분배, 역할 등) 사전협의 및 협의 결과 제출 필수
- 공연단체는 공연시설과 공연 진행에 필요한 무대, 장비, 예산 등 사전 확인 및 협의 필수
- 국가계약법 및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매뉴얼에 근거한 공연단체 용역 수의계약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용역 계약을 위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수
- 공연단체 용역비 선금 지급 권장
- 유료 공연 필수(정가 20,000원 이상/할인정책 적용 가능)
- \* 공연 티켓단가는 공연시설과 공연단체가 협의를 통해 기존 판매가와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며, 지역민을 위한 할인정책 적용 권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시스템 이용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실적 공개 필수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통)**

- 최근 2년 내('24-'25년) 동일한 공연시설에서 동일단체의 동일공연을 상연한 경우
-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의 지역축제, 발표회, 정기연주회 등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

**□ 지원 규모**

- (공연단체 기준) 1단체 1작품
  - ※ 공연작품별 최대 6개 시설, 총 10억원 이내 지원
- (공연시설 기준) 최대 3개 작품 / 시설당 최대 3억원 이내

구분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비고
공연단체	공연단체당 1개 공연작품 지원		단체별 중복 신청 불가
공연작품	공연작품별 최대 6개 공연시설 유통	작품당 10억원 이내	6개 공연시설에서 신청한 공연 용역비 지원금 총액 기준
공연시설	공연시설당 최대 3개 공연작품 신청 가능(장르 중복 금지)	시설당 최대 3억원 이내	총 지원예산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지원금액	공연시설별 총 지원금액 산정	61.73억원 ÷ 지원신청 공연시설 수	선정 결과는 최대 3억원 이내 *전체 지원신청액이 총 지원예산(61.7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액 조정 가능 *조정 시 공연시설은 추가 자부담 편성 필요

\* 단, 협의 이후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예산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방식(자율 매칭)**

-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은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지원 신청단체, 신청공연, 신청 공연시설이 지원요건에 적격한 경우, 총예산 내 공연시설이 선택한 공연을 지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시설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공연시설은 공연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사업 및 공연을 책임 운영

## □ 세부 추진 일정(안)

주체	①예경	②공연시설공연단체	③공연시설	④예경	⑤예경
추진 내용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공연시설 대상 추가 공모 공고 및 신청 가능 공연목록 공개	공연시설 유통플랫폼 내 공연 작품 정보 확인 후 단체와 일정 무대기술 조건 예산 등 반드시 협의	공연시설 공연유통플랫폼 회원가입 및 공연장 등 정보등록 후 공모 신청 제출	공연시설 신청 내용 및 지원 범위 초과 여부 검토 후 조정요청	「2026년 대표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공연시설 추가 공모 최종결과 확정
일정	4.20.(월)	4.20.(월) ~ 5.12.(화)	4.20(화) ~ 5.12(화)	5.15(금)-6.2(화) 예정	6.8.(월) 예정

※ 상기 추진 일정은 공모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 적격성 검토

- (검토방식) 공연예술유통 플랫폼 등록 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사업 신청 대상인 공연시설의 지원사업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신청 승인
- (검토 기준)
  - 공연시설이 지원 가능한 대상 여부
  - 공연시설의 지원 자격요건 충족 및 지원 결격 여부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공연시설의 신청 예산의 적정성 여부
  - 동일 공연작품의 당해연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최대 지원 규모 또는 타 기관의 공연예술 유통사업 참여 확정 여부

## □ 지원 유의사항

-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 지원확정 후에도 지원 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보조금법」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li> <li>·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li> <li>·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li> <l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li> <li>·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li> </ul>
---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능한 기관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사업수행 시, 상해보험·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공연장 안전교육·성희롱성폭력교육 수수료 등을 미이행할 경우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 □ 예산편성 세부기준

- 총 사업비의 10% 이상 공연시설 자부담금 책정 필수

< 공연시설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지원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목	세목	자부담금	보조금	비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비상근인력(단기인력, 하우스어써 등) 사례비 - 홍보비(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비, SNS광고비)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일반용역비 (14)	- 공연단체 대상 순회공연 용역비 - 공연 연계 부대 프로그램 운영비 - 홍보 대행 용역비 등		* 순회공연 용역비는 견적서 제출 필수

※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 (약기 구입비 등), 회의 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부가가치세 편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에 대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함

\* 회계 검증 수수료 단가는 반드시 아래 표 참고 (이외의 예산은 추후 협의)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회계검증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28,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89,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22,000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85,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633,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683,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731,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79,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82,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1,034,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1,225,000

## □ 지원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5월 12일(화) 17:00 마감
  - \* 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제출 불가
- (신청방법) 공연예술유통 P:art:ner(<https://gokams.or.kr/partner>)
  - \* e나라도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 지원조건

- e나라도움([www.bojo.go.kr](http://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지원금은 공연시설에 교부되며,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지원조건에 따라 공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례비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기준 안내서」 의무사항 준수
  - 사업참여자 역할, 참여 기간, 연령, 사례비 지급금액 등에 따라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및 신고·납부 필요
  - 사업참여자 전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 참여 후 교육 이수증을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 사업참여자 전원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 \*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할 경우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 □ 단계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1 공연신청내역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①-2 공연시설 사업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①-3 공연협의확인서(공연시설, 공연단체)	
①-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활용(excel), 신청 시 첨부
② 협의된 예산서(공연시설, 공연단체)	

## □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 (이메일) [promokams@gokams.or.kr](mailto:promokams@gokams.or.kr), (전화) 02-708-2225
  -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2026년 지역 유통 공모 차이점

구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지원예산	○ 총 250억원	○ 총 140억 원 예정
사업목적	○ 공연시장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공연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공연산업의 활력 제고	○ 공연시장 수요를 반영한 대표공연 콘텐츠의 전국 순회 유통을 통한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 완화 및 문화 접근성 제고
신청규모	○ 공연시설당 최대 1.4억원 이내 ○ 공연단체당 최대 5개 공연시설 지원	○ 공연시설당 최대 3개 공연작품, 3억원 이내 ◎ 공연단체당 최대 6개 공연시설, 10억원 상한
공연작품	○ 기초 공연예술 분야(무용, 뮤지컬, 연극, 음악, 전통) 공연 * 제작이 완료되어 유통 가능한 공연 * '25년 8월까지 1회 이상 전막 유료 공연 이력이 있는 공연 * 공연의 티켓판매 실적을 공연시설 대상 공개 가능한 작품	◎ 지원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으로 해당 공연에 대한 목록[참고 1] 별도 제공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24~'25년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무용(서양/한국), 한국음악(국악) 장르로 집계된 공연작품 2) KOPIS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 기준,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공연작품 3) KOPIS 기준, 장르별 회당 티켓판매액 상위 40개 공연작품 중 유통 희망 작품
공연단체	○ 민간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	○ 민간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 공공(광역·기초) 공연단체·기관
공연시설	○ 서울 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800석 이상 객석수를 보유한 공공 공연시설(등록공연장)의 실내공연장
지원규모	○ 공연시설당 1.4억원 정액 지원 단, 공연시설 수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250억원 ÷ 신청 공연시설 수)	○ 공연시설당 최대 3억원 정액 지원 단, 공연시설 수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140억원 ÷ 신청 공연시설 수)